

제주지방법원 2021. 6. 22 선고 2020가단553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

변 론 종 결 2021. 5. 11.

판 결 선 고 2021. 6. 2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8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9. 3. 11. 접수 제214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주문 제2항과 관련하여 청구취지에 ‘C에게’가 아닌 ‘원고에게’로 기재된 것은 오키로 보인다).

이 유

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제주시 및 제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C에게 2019. 1. 21. 1,000만 원, 같은 해 1. 22. 1,000만 원, 같은 해 2. 1. 1,000만 원, 같은 해 2. 28. 1,000만 원 합계 4,000만 원을, 차용 후 20일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,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, C은 자신의 유일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3. 8.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2019. 3. 11.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준 사실, 피고는 C의 형인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장욱

별지 목록

1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		과수원 2373㎡
2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		과수원 637㎡
3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		과수원 2488㎡ 끝.